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09 발의연월일: 2024. 12. 9.

발 의 자:이광희·조인철·주철현

박해철 • 박희승 • 임미애

박홍배 • 이용선 • 김남근

강준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무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2025년 1월 31일부터 경비업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여 전문경비원으로 하여금 혼잡한 지역에 교통사고 위험을 개선하고 원 활한 교통흐름과 사고를 줄이고자 도입되고 있음.

현행법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경비업자가 영세하거나 고의 과실로 배상을 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를 국민이 떠안아야 함.

다른 공사업이나 서비스업은 고의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공제나 보험에 가입할 것을 제도 화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경비업자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경비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제23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손해배상 등) ①・② (생	제26조(손해배상 등)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u><신 설></u>	③ 경비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
	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제23조
	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
	<u>다.</u>
<u> <신 설></u>	④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
	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
	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u>령으로 정한다.</u>